

1. 개정이유

소비자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와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대응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시 전문분야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육제도를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IT 활용 부동산서비스, 데이터분석 기법 등 프롭테크 교육 강화

(안 제4조제6의3)

나. 연수교육 시 중개대상물별 등 전문분야 교육을 30% 이상 실시토록 함

(안 제4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인중개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6의3. I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부동산서비스 및 데이터분석 기법 등
관련 교육

② 제3조의2제3호의 교육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교육과목 이외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별 중개 또는 법 제14조제1항 및제2항 에 따른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관련 분야 교육을 총 교육시간의 30% 이상으로 실시한다.

제5조제3항 전단 중 “사항”을 “사항, I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부동산서비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. 10.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교육과목) ① 교육의 과목 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 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하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 조의2제2호에 따른 중개보조원 의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.	제4조(교육과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의2. (생 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6의3. I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부동산서비스 및 데이터분석 기법 등 관련 교육</u>
7. ~ 10. (생 략)	7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 제3조의2제3호의 교육의 경 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 에 따른 교육과목 이외 법 제3 조에 따른 중개대상물별 중개 또는 법 제14조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에 필요한 관련 분야 교육을 총 교육시간의 30% 이상으로 실시 한다.</u>

② 교육기관은 교육시간 중에 <u>제1항</u>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및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강의하거나 특정 단체 또는 특정 공제상품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③----- <u>제1항 및 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교육방식) ①・② (생략) ③ 사이버교육은 부동산 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,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용,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<u>사항</u> 등 개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하며, 이 경우 교육기관은 인터넷 수강 시설을 확보(타 교육기관의 시설이용 포함)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	제5조(교육방식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항, IT</u> <u>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부동산서비스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